

내 규

제 1장 총 칙	2
제 2장 입 학	3
제 3장 교과목 이수	4
제 4장 학위취득	5
제 5장 장학금 운영	6

양 식

양식 1. 연구실 배정 원서	7
양식 2. 학위논문 중간보고서	8
양식 3. 종합시험 연구계획서(학업성취도)	9
양식 4. 가제본 논문제출확인서	10

별 첨

별첨 1.	
------------	--

제 1장 총 칙



최종개정일: 2021. 10. 13.

제 1조(명칭) 연세대학교 대학원 바이오산업공학협동과정(Graduate Program in Bioindustrial Engineering)이라 한다.

제 2조(목적) 기능성 생물소재를 중심으로 한 신기술 개발, 제품 가공 및 조제, 산업화 및 마케팅 등 고 부가가치 생물소재 개발에 필요한 다학제적 특성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이 분야 고급 전문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3조(구성) 교수진은 바이오산업공학협동과정에 참여하는 교수로 구성한다.

제 4조(운영위원회) 본 과정의 운영을 위하여 5인 이상의 운영위원을 다음 각 호에 우선순위를 두고 구성하며, 주임교수가 그 장이 된다.

- ① 바이오산업공학협동과정에 지도 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경우
- ② 바이오산업공학협동과정 운영에 관여 하는 경우
- ③ 임기 기간 동안의 생명공학과 학과장
- ④ 바이오산업공학협동과정에 참여하는 교수 중에서 신규 운영위원이 될 수 있으며, 과반수 참석 한 운영위원회에서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.
- ⑤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
제 5조(겸임교수 및 겸직교수) 겸임교수 임용은 학교 규정을 따른다.

- ①(자격) 겸임교수는 국가기관, 교육 및 연구기관, 산업체 등에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있거나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 한다.
- ②(임용) 겸임교수는 대학(원) 혹은 그 대학(원) 산하 기관의 소속인 경우 해당 기관의 인사위원회 및 대학(원)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(원)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계약임용하며, 대학(원) 및 그 산하 기관의 소속이 아닌 경우 해당 기관 인사위원회의 심의, 해당 기관장의 추천,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계약 임용하며, 임용기간은 1년 단위로 하되 재임용 할 수 있다.
- ③(처우) 겸임교수는 무급을 원칙으로 하며, 강의를 할 경우 일정액의 강사료를 학교기준에 준하여 지급한다.

제 6조(겸직교수) 겸직교수 임용은 학교 규정을 따른다. (개정: 2021.02.18.)

- ① 본교 신입교원 채용시 임용된 신입교원은 본 학과 겸직교수로 채용할 수 있다.
- ② 겸직교수의 내부겸직기간은 2년이며, 심사 후 겸직기간 연장은 가능하다.
- ③ 겸직교수는 협동과정에서 1년에 전공(3학점)수업 1회 이상을 해야 한다 (단, 본인이 속해있는 학과와 공동과목개설도 가능함)

제 2장 입 학



제 7조(입학 및 지원 자격)

- ① 대학원의 입학(편입학 및 재입학을 포함한다) 시기는 매학기 시작일 이내로 한다.
- ② 입학전형은 일반전형을 원칙으로 하되 방법 및 일정은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필요에 따라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.
- ③ 대학원의 각 학위과정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다음의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.

1. 석사학위과정

- 가. 국내·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받을 예정인 자
- 나. 기타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

2. 박사학위과정

- 가. 국내·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받을 예정인 자
- 나. 기타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

3. 통합과정 : 동조 제1호(석사학위과정)를 적용한다.

4. 학부-대학원 연계과정

- 가. 본교 학부에서 4학기이상에 재학 중인 자.
- 나. 총 평량평균이 3.3/4.3 이상인 자.

제 8조(입학전형방법)

- ① 대학원 각 학위과정의 입학전형 방법은 서류심사로 하되 필요에 따라 필답시험과 구술시험을 부과할 수 있다.

제 3장 교과목이수



제 9조(이수학점)

- ① 석사과정 학생은 학위취득에 필요한 30학점 중 12학점 이상을 본 협동과정 개설과목 또는 협동과정 겸직교수가 개설하는 전공이론과목으로 취득해야하며, 나머지 학점은 지도교수의 승인 하에 관련된 타 학과에서 취득할 수 있다.
- ② 박사과정 학생은 학위취득에 필요한 30학점 중 15학점 이상을 본 협동과정 개설과목 또는 협동과정 겸직교수가 생명과학부(생명공학과, 시스템생물학과 및 생화학과)에서 개설하는 전공이론과목으로 취득해야하며, 나머지 학점은 지도교수의 승인 하에 관련된 타 학과에서 취득할 수 있다.
- ③ 석·박사 통합과정 학생은 학위취득에 필요한 54학점 중 27학점 이상을 본 협동과정 개설과목 또는 협동과정 겸직교수가 생명과학부(생명공학과, 시스템생물학과 및 생화학과)에서 개설하는 전공이론과목으로 취득해야하며, 나머지 학점은 지도교수의 승인 하에 관련된 타 학과에서 취득할 수 있다.
- ④ 본 이수학점에 관한 내규는 바이오산업공학협동과정 재학생에게 소급하여 적용한다.

제 10조(수강)

- ① 연구지도 1,2 (0학점, 평가 P/NP)
 - 연구지도 1: 학교 규정에 따라 석사과정생이 4학기에 1회 수강한다.
 - 연구지도 2: 학교 규정에 따라 박사는 4학기부터, 석·박사 통합과정은 6학기부터 2회 이상 수강한다.
 - 연구지도 1, 2 과목은 자동으로 부여되므로 학생이 자율적으로 삭제하지 않는 한 졸업요건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강신청이 되어 있다.
- ② 필수이수과목은 없음

제 4장 학위취득



제 11조(종합시험)

① 응시자격

박사과정생 및 석·박사통합과정생 중 24학점 이상 취득한 자로서 4학기 이수 (4학기말) 후 에 응시가 가능하다.

② 종합시험

1. 석사과정생

학위논문중간보고서(양식3)를 학과사무실로 제출하여 논문 지도 및 수강 여부를 확인 받음으 로써 종합시험을 대체한다.

2. 박사과정생 및 석·박 통합과정생(양식4)

가. 2018학년도 입학생부터 종합시험은 학업성취도와 구술시험으로 평가한다. (개정: 2018.11.28.)

나. 학업성취도는 바이오산업공학협동과정 전공과목 중 4과목의 학점이 B+ 이상이 되어야 한다.

다. 구술시험은 연구계획서를 포함한 구술로 평가하며, 2017년 2학기 입학생을 포함하여 모 든 학생에게 적용된다.

라. 2017년 2학기 이전 입학생은 기존의 종합시험 내규 <필기시험+ 구술시험>와 개편된 종합시험 내규 <학업성취도+ 구술시험> 평가 방법 중 선택 또는 병행할 수 있다.

제 12조(외국어시험)

① 면제

바이오산업공학협동과정은 입학, 졸업 시 모두 외국어시험을 면제한다.

제 13조-가(학위논문 제출자격)

① 자격시험(종합시험) 합격자

② 총평량평균 3.0 이상

③ 졸업에 가능한 이수학점을 모두 이수하고 재학 중인 자

(연구지도 등 보충 및 청강과목은 이수학점에 포함되지 않음)

④ 석사학위과정 수료자는 소정의 논문발표(국내외 학회의 구두, 또는 포스터)나 특허출원/등록 을 최소한 1건 이상 하였을 때 학위논문의 본심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.

⑤ 박사학위과정 및 석·박사 통합과정 수료자는 한 분야에서 수행한 연구결과에 대해 SCI(E)논 문 1편 이상을 주저자로 게재(지도교수와의 교신)하였을 때 학위논문의 본심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. (개정: 2019.12.02.)

⑥ 석사 및 박사학위논문은 영문으로 작성 한다. (개정: 2019.12.02.)

⑦ 삭제 (개정: 2019.12.02.)

⑧ 세부사항

1) 제1저자 논문 인정 항목의 경우 n명의 공동 제 1저자가 있을 경우 1/n편으로 인정함.

2) 본심전에 논문의 게재증명(acceptance letter)을 받은 경우는 발표한 것으로 인정함.

3) 학연과정 및 파트타임 학생은 논문에 지도교수가 교신저자 또는 공동교신 저자이어야 하

며, 학생 본인의 소속으로 연세대학교 바이오산업공학협동과정을 포함하여야 한다.

(개정: 2019.12.02.)(2020년 1학기 입학생부터 적용됨.)

4)위 학술논문은 원저(Original Research) 논문으로 한정한다.

제 13조-나(석사학위논문 대체실적 시행) (개정: 2021.10.13.)

① 대상: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, 석사 3학기 이상 이수자중 학위논문에 상응하는 대체실적을 제출하려는 자

② 대체실적 승인요건(필수요건 1,2를 모두 충족해야한다.)

필수요건1: ① 전공 6학점 이상 교과목 추가 이수

② 취득학점의 총 평량평균이 3.0 이상

필수요건2: 총설논문 제출(20페이지 이상, 국·영문 가능)

③ 심사: 대체실적 심사 신청 후 심사기간 내에 3인 이상의 심사위원에게 평가 받는다.

제 14조(졸업시기)

① 석사과정: 학위논문연구계획서를 제출한 당해학기에 심사를 받은 후 졸업이 가능하다.

② 박사, 석·박 통합과정: 학위논문연구계획서를 제출한 당해학기에는 졸업이 불가하고, 제출 후 1학기이상 경과 후 심사를 받고 졸업이 가능하다.

제 15조(학위논문 심사 절차와 시기)

① 학위논문연구계획서, 심사위원 명부 제출: 3월 초 / 9월 초

② 예비심사: 4월 중 / 10월 중

③ 본심사: 6월 중 / 12월 중

④ 학위논문 완성본 제출: 7월 중순 / 1월 중순

제 16조(학위논문 심사 세부 방법)

① 박사학위 논문제출은 졸업을 희망하는 학기의 직전 학기말까지 학위논문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받고 논문제출여부를 결정한다.

② 졸업대상자는 학위논문 심사절차에 따라 연구계획서, 심사위원 명부를 제출한 후 개별적으로 지도교수 및 심사위원과 상의하여 예비심사, 본심사를 진행한다.

③ 예비심사, 본심사 5일전에 가제본 논문을 심사위원 교수님들께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석사, 박사 모두 학위논문을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한다.

⑤ 예비심사, 본심사는 심사위원 전원(외부 심사위원 포함)이 참석한 경우에만 심사를 진행한다.

제 5장 장학금 운영



제 17조(BK미참여학과 경쟁력 강화사업 장학금 운영)

- ① BK미참여학과 경쟁력 강화사업 운영 지침을 따른다.
- ② 성적우수장학금 추천항목의 예산내 비율은 원칙상 전체 예산의 50%를 원칙으로 하지만 그 비율을 바이오산업공학협동과정 내부지침에 반영 후 조정할 수 있다. (개정: 2018.10.)

부칙

- ①이 개정학칙(제4장 제 12조)은 2020년 6월 22일부터 시행하고, 개정된 내규는 2019년 2학기에 입학한 바이오산업공학협동과정생에 적용되며, 이전 생물소재공학협동과정 입학생은 개정 전 생물소재공학협동과정 내규에 적용을 받음.
- ②이 개정학칙(제1장 제6조)은 2021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- ③이 개정학칙(제 13조-나)는 2022년 1학기부터 시행하고 2018년 3월 이후 입학생들에게 소급적용 가능하다. (단, 석사과정 재학연한(8학기) 최종 학기의 연구계획서 제출일까지 심사를 요청해야 하며 재학연한 초과시 대체실적 심사 신청이 불가하다.)

<양식 1>

확인_____

연구실 배정원서 바이오산업공학협동과정

1. 인적사항

성명		지원과정		연락처	
----	--	------	--	-----	--

순위	연구실명	담당교수
1		
2		
3		

2. 배정 희망 연구실

학부	석사

3. 출신학교(전공분야)

위와 같이 연구실 배정원을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성명_____ (인)

<양식 2>

학위논문 중간 보고서 (석사)

제 출 자	과 정		학과		학번	
	성 명		학기		졸업 예정일	년 월

1. 논문제목 :

2. 주요 연구내용

3. 연구실적 : 별지 사용

가. 연구논문(SCI)

나. 학술발표

다. 특허

라. 기타

** 본인의 이름 아래에 밑줄로 표시

구 분	소 속	성 명	평가결과 (가/부)	평 가 의 견
지도 교수		(인)		
부심		(인)		
부심		(인)		

〈양식 4〉

바이오산업공학협동과정 종합시험 연구계획서

1. 학생정보

학과		과정/학기	
학번		성명	
연구실명		지도교수	(인)
제출학기		이수학점	

2. 제출 자격 확인

■ 자격 요건

- 가. 2018학년도 입학생부터 종합시험은 학업성취도와 구술시험으로 평가한다.
- 나. 학업성취도는 수강한 학점으로 평가하며, 생물소재공학협동과정 전공과목 중 4과목의 학점이 B+ 이상이 되어야 한다. (세미나, 연구법 과목 제외: 최신생물소재와산업, 생물소재개발, 생물소재와산업 등)
- 다. 학업성취도는 수강한 학점으로 평가하며, 바이오산업공학협동과정 전공과목 중 4과목의 학점이 B+ 이상이 되어야 한다. (세미나, 연구법 과목 제외: 최신생물소재와산업, 생물소재개발, 생물소재와산업 등)
- 라. 구술시험은 연구계획서를 포함한 구술로 평가하며, 2017년 2학기 입학생을 포함하여 모든 학생에게 적용된다.
- 마. 2017년 2학기 이전 입학생은 기존의 종합시험 내규 <필기시험>와 개편된 종합시험 내규 <학업성취도와 구술시험> 평가 방법 중 선택 또는 병행할 수 있다.

과목명	담당교수	성적	필기시험 과목(V체크)
1.			
2.			
3.			
4.			

※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3. 심사위원회 구성

구분	지도교수	심사위원	심사위원	심사위원	심사위원
교수명					

< 요약 문 >

연구목표 (500자내외)	
연구내용 (1000자내외)	
기대효과 (500자내외) (응용분야 및 활용범위 포함)	

○ 연구목표, 연구내용, 기대효과 모두 필수 입력 사항임.

< 연구 계획 >

작성요령 (제출 시 삭제)

- 연구내용의 창의성·도전성 및 중·장기 연구방향 등을 제시하여 에세이(Essay) 형식으로 5페이지 이내 기술